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학기술의 발달 및 행정소송 판결사례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장애 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장애인복지법상 판정기준과 일부 일치를 통해 수용성 제고

1)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 100% 강직 → 90% 강직 (장애인복지법 장애판정기준과 일치)

· 제4절 지체의 장애 3.척추의 장애 나.인정요령 (4)의 (가), (나)항

2) 청구인이 동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 진단서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편익 제고

· 장애심사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3)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을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에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로 장애인복지법 판정기준과 일치

·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1. 신체장애 각도 측정의 일반원칙 가. (3)항 및 2. 운동범위 측정요령 가항

4) 장기이식자(호흡기, 심장, 간)의 경우 장애판정을 6개월 경과일에 할 수 있도록 조기완치 인정기준 마련

· 제6절 호흡기의 장애 2.인정요령 가. (5)항

· 제7절 심장의 장애 2.인정요령 가. (4)항

· 제9절 간의 장애 2.인정요령 가. (5)항

5) 팔·다리를 절단한 경우 절단부위 상처치유 기간에도 완치일을 인정하여 장애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나.인정요령 (1) (마)항
-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나.인정요령 (1) (바)항
- 6) 안구적출술 외에 안구내용물을 제거한 수술일도 완치일로 인정
 - 제1절 눈의 장애 2.인정요령 바항

나. 초진일 등 인정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

- 1) 안구운동장애 검사방법 규정 보완
 - 제1절 눈의 장애 2.인정요령 마항 (1),(2)
- 2)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안과질병의 초진일 인정기준 규정
 - 제1절 눈의 장애 2.인정요령 바항
- 3) 언어장애의 경우 실어증검사로 판정도구를 통일하여 불필요한 자료 보완이 없도록 개선
 - 제3절 입의 장애 2.인정요령 나. (2)항
- 4) 무릎관절 동요 측정 기준 및 검사방법을 명확화
 - 제4절 지체의 장애 2. 다리(발가락)의 장애 가. 4급6호 및 나.인정요령 (5) (가)와 (나)항
- 5) ‘식물인간’ 인정에 관한 기준 규정 마련
 - 제4절 지체의 장애 4.사지마비의 장애 나.인정요령 (1) (마)항
- 6) 정신장애의 원인질병에서 기질·비기질성 구분 삭제
 -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2.인정요령 가항
- 7) 만성신부전 초진일 인정기준 규정
 - 제8절 신장의 장애 2.가.인정요령 (2)항
- 8) 안면장애 검사시 민감한 개인정보인 동영상자료 요구근거 삭제
 - 제12절 안면의 장애 2.인정요령 바항

다. 기타 문구·서식 등 정비로 장애심사규정의 정확한 운영 도모

- 1) 개정(‘11.12.8)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2와 표기 일치
 - 제6절 호흡기의 장애, 제7절 심장의 장애, 제8절 간의 장애 1. 장애등급의 기준 등

- 2) 언어장애 인정기준과 인정요령에서 각기 상이한 표기 통일
 - 제3절 입의 장애 2.인정요령 나. (5)항의 (가),(나),(다)
- 3) 저시력기준 0.3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기존장애” 문구 추가
 - 제1절 눈의 장애 2.인정요령 다. (2)항
- 4) 시야장애 중 “두 눈의 시야합계”에서 “두눈 각각의 시야합계”로 명확히 규정하여 합계방법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배제
 - 제1절 눈의 장애 1.장애등급구분의 기준 4급9호
- 5) 팔·다리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각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사지마비 기준 적용근거를 마련
 -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나.인정요령 (1) (가)항
- 6) 실제 지급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자문료와 자문수당 구분 일원화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1조
- 7) 총론 외에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완치 인정기준 및 초진일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 제1장 총론 2. 나항 및 다항
- 8)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서식을 개정(별지1)하고 그에 따르는 장애 분류별 ‘소견서’ 서식(별지 제2~16호)을 마련하여 진단 의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재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게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2013. 1. 2. ~31.
 3) 규제심사: 규제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8호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국민연금 장애 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2호, 2011.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 및 자문료”를 “자문수당”으로 하고, “자문의사가 제9조제1항”을 “공단은 자문의사가 제9조”로 하며, “자문료를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였을 때에는 수당을”을 삭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이 경우(이하생략)”을 삭제하며,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장애진단서(이하 ‘장애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를 추가하고 제2항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2013. 2. 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이후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시 적용했던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의 제1장 총론 2. 용어의 정의 중 나항과 다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항 “완치”를 “완치와 완치일”로 하고, “다만, 완치일을 분류별 장애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추가하며, 다항 “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의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눈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4급9호 “정도의”를 “정도로”로 하고, “시야각도의 합계가”를 “시야가 각각”으로 한다.

2. 인정요령 다. (2)항의 “저시력 인정 기준은 0.3으로 한다.”를 “기존 장애로 보는 시력은 저시력 인정기준인 최대 교정시력 0.3이하로 한다.”로 한다.

마. (1)항의 “판정 한다.”를 “판정 하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운동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로 하고, “(2)항 복시는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 사시

각이 5프리즘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를 신설한다.

바. “안구적출술”을 “안구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로 하고, “수술일로 완치일을”을 “수술일을 완치일로”로 한다.

차.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안과질환(망막색소변성증 등)의 초진일은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날 또는 0.3이하의 시력저하나 전형적인 시야장애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단,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우선하는 날을 초진일로 본다.”를 신설한다.

제2절 귀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3급2호와 4급2호의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제3절 입의 장애 2. 인정요령 나. (2)항의 (나)와 (다)를 삭제하고, (라)를 (나)로 한다.

(5)항의 (가)와 (나)의 “못하고”를 “못하거나”로 하고, ① “이하이거나 (이하 생략)”를 “이하인 경우”로 하며, ②는 삭제하고, ③을 ②로 한다.

(5)항의 (다) ① “이하이거나 (이하 생략)”를 “이하인 경우”로 하며, ②는 삭제하고, ③을 ②로 한다.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4급 9호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라)항 “경과일로 완치일을”를 “경과일을 완치일로”로 하고, (마)항 “절단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 인정하되, 추가절단 및 동일부위에 연속적으로 절단이 이뤄진 경우”를 삭제하며, “최종절단일”을 “최종절단일(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1월”을 “1개월”로 하

며, “인정한다. 단,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절단부위의 상태가 안정된 때에”를 “인정하되,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로 한다.

2. 다리(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4급6호 중 “전후방 10mm”를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로 하며, 4급9호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바)항 “절단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 인정하되, 추가절단 및 동일부위에 연속적으로 절단이 이뤄진 경우”를 삭제하고, “최종절단일”을 “최종절단일(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 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1월”을 “1개월”로 하며, “인정한다. 단,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절단부위의 상태가 안정된 때에”를 “인정하되,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로 한다.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절의 동요정도 측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측정한 후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 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 관절을 약 20~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

(다) 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관절을 약 70~9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

3. 척추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2급4호의 “고도의”를 “극히 심한”으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가)항의 “변형장애와 기능장애”를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하고, “판단한다.”를 “판단하고, 변형장애는 반드시 누운자세 (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촬영(Spine Scanogram)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로 한다.

B표 흉추부 운동가능영역 “T1-T2, T2-T3, T3-T4, T4-T5, T5-T6, T6-T7, T7-T8, T8-T9, T9-T10”을 삭제하고, “합계(11분절) 21(64)”를 “합계(2분절) 21”로 한다.

(다)항을 (라)항으로 하고, (라), (마), (바)항을 삭제한다.

(사)항을 (다)항으로 하고, “척추를 2개 이상의”를 “척추 한 분절 이상을”로 하며, “와이어고정술은”을 “와이어고정술 등은”으로 한다.

(아)항을 (마)항으로 하고, “6월”을 “6개월”로 한다.

(자)항을 (바)항으로 하며, (4)에 (가)항과 (나)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완전강직”이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나) “완전유합”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단순 방사선사진 또는 CT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의 후종인대골화의 두께가 2mm이상
- ② 척추체의 완전골화
- ③ 그 외 척추의 후외방 골유합 상태

4. 사지마비의 장애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6호의 “보호를 요하는”을 “보호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1호 “고도의”를 “극히 심한”으로 하고, “고도의”를 “극히 현저한”으로 하며,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1호와 4급9호의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나. 인정요령 (1) (가)항 “판정하지만”을 “판정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으로 하고, (나)항 “12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을 “12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로 하며, (다)항과 (라)항의 “6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로 한다.

(마)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식물인간 상태"라 함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되, 뇌영상사진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⑤, ⑥ 항은 제시된 기준보다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①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 반응이 없다.
- ②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못한다.
- ③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 ④ 장과 방광 조절이 안된다.
- ⑤ 각성과 수면 주기에 의한 간헐적 각성이 있다.
- ⑥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눈을 움직이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마)항을 (바)항으로 한다.

(2) (나)항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신설한다.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7호의 "정신 또는 신경계통"을 "정신이나 신경계통"으로 하고,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2호 "정신 또는 신경계통"을 "정신이나 신경계통"으로 하고, 4급 10호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을 "노동에 제한을"로 하며,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를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알콜중독장애, 기질적 뇌증후군(일산화탄소중독, 두부외상 후유증, 뇌혈관계질병 등) 및 비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알콜중독장애, 일산화탄소중독, 두부외상 후유증, 뇌혈관계질병 등"으로

하고, “정신장애는”을 “장애등급 결정은”으로 한다.

제6절 호흡기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5)항 “폐를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를 신설한다.

제7절 심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4)항 “심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심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를 신설한다.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한다. 단,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

② 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인 때(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

(2)항을 (3)항으로 한다.

(3)항을 (4)항으로 하고, “3월”을 “3개월”로 하며, “6월”을 “6개월”로 한다.

(4)항을 (5)항으로 한다.

제9절 간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가. (5)항 “간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간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를 신설한다.

A표 4.의 “2)항”을 삭제하고, 3)을 2)로 하며, 4)를 3)으로 한다.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와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4급11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한다.

제12절 안면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2급11호 “고도의”를 “극히 심한”으로 하고,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으로 한다.

3급11호 “노동을 현저히 제한할”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로 한다.

2. 인정요령 바항의 “동영상 자료”를 삭제하며, 자항의 “경과한 날로 완치일을”을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로 한다.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급8호의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장기에 걸쳐”를 “장기간의”로 하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을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으로 한다.

2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를 “노동에 극히 심한”으로 하며, “또는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3급13호 “상병이”를 “부상이나 질병이”로 하고, “노동에 있어서 현저한 ”을 “노동에 심한”으로 하며, “노동에 제한을”을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로 하고, “정도의”를 “정도로”로 한다.

2. 인정요령 다항의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1. 신체장애 각도 측정의 일반원칙 가. (3)항 “기능(운동) 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를 “기능(운동) 장애는 원칙적으로 수동운동에”로 하고, “적용하지만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을 “적용한다. 단, 신경손상으로 마비장애

가 있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으로 하며, "참고로"를 "측정하여"로 한다.

2. 운동범위 측정요령 가항의 "능동운동"을 "수동운동"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의4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의5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5호 내지 제16호 서식"을 신설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분류	장애 유형/부위							
	장애의 원인 상병명							
장애발생 및 완치일	부상일 또는 발병일			
	초진일			
	완치일			
치료내용 및 장애상태	※ 주요 치료내용 및 장애상태를 기재 하되, 각종 검사 소견, 현재까지의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최초 투석일 등) 및 모든 임상증상 등 장애상태를 “장애유형별 소견서”에 상세히 기재							
기존 장애(동일부위)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발생시기	. . .		기존 장애상태			
향후 장애상태	일상생활 활동 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예후			
	변동 가능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변동 가능 사유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합니다.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right;"> 년 월 일 </div>								
진단기관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 인</div>			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의사 면허번호				
의료기관지정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유 의 사 항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인 때는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대체할 수 있음)하여 확인하고 날인한다.
2. 국민연금 심사를 위해 진단서 발급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상병이 완치된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되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3.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 재 요 령

1. 치료내용: 수술내역(수술명, 수술일), 항암치료, 검사항목 등을 자세히 기재.
 - 가. 안과 장애 : 질환에 따라 칼라안저사진, VEP(시유발전위도검사), OCT(시신경망막CT), FAG(형광조영술),
ERG(전기생리검사), 시야검사, 굴절검사 등이 필요.
 - 나. 정형외과, 신경계통 장애 : X-RAY 사진, CT, MRI 사진,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검사소견 기재 및 결과 첨부.
 - 다. 호흡기 장애 : 폐기능 검사결과, 흉부 X-RAY 사진 등.
 - 라. 간질환 장애 : 알부민, 빌리루빈, 프로트롬빈시간연장(초)/INR 등.
 - 마. 혈액·조혈기 장애 : 골수검사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혈색소, 절대호중구수, 혈소판) 등.
 - 바. 이비인후과계통 장애 : 평균순음청력역치검사(3회) 또는 최대어음명료도(3회), 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등.
 - 사.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 해당부위관련 검사결과지(CT, MRI, 초음파, 내시경, 조직검사 등)
2. 장애상태 : 모든 임상증상(자각, 타각)을 상세히 기재하고 해당 소견서(담당의사 날인) 첨부.
 - 가. 안과 장애 : 시력장애(최대교정시력) 및 시야장애 등에 대해 기재.
 - 나. 입의 장애 : 섭취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개구정도, 교합상태, 발음불능 및 어음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 정형외과 장애 : 절단부위 또는 마비(강직)정도, 관절운동제한 부위 및 정도, 근력등급 등 기재.
 - 라. 신경계통 장애 : (간질의 경우) 간질병력, 양상(중증발작, 경증발작), 빈도, 주당횟수 기재
인지기능장애시 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
 - 마. 간질환 장애 : 복수의 중증정도 및 지속여부, 식도정맥류(중증정도, 출혈여부, 횡수), 간성뇌증 등 기재.
 - 바. 언어 장애 : 언어정도(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 사. 신장 장애 : 최초 투석일(주2회 이상 최초 투석하게 된 날) 및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신이식일 및 신이식 후 거부반응 유무 등.
 - 아. 복부·골반장기 장애 : 건강시 대비 체중감소정도(KG), 치료내용, 각종 임상증상 구체적으로 기재.
 - 자. 정신 장애 : 정신질환의 진단명, 치료내용, 정신질환의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 차. 악성신생물(고형암) 장애 : 암의 전이 및 재발 상태, 치료내용(수술, 항암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기존장애(질병포함) : 동일부위에 현 장애 이외의 장애를 이미 지니고 있는 경우이며 발생시기, 장애상태 등을 기재.
4. 향후 장애상태에 관한 의견 : 일상생활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진단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진단서에 있는 용어 정의
 - 가. 초진일 : 장애의 원인이 되는 부상 또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하되,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때를 초진일로 보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초진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는 “미상” 으로 기재.
 - 나. 완치일 :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를 말하되,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때를 완치일로 봄

[별지 제3호 서식]

국민연금(척추 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고정술 시행한 분절 표시					
경추부	운동기능기여도	고 정	흉요추부	운동기능기여도	고 정
Occiput-C1	13		T10-T11	9	
C1-C2	10		T11-T12	12	
C2-C3	8		T12-L1	12	
C3-C4	13		L1-L2	12	
C4-C5	12		L2-L3	14	
C5-C6	17		L3-L4	15	
C6-C7	16		L4-L5	17	
C7-T1	6		L5-S1	20	
합계	95		합계	111	
변형 정도	구배 ()도, 측만 ()도				
척추수술 (고정술, 골유합술)	수술명 (), 수술일 () 고정술 분절범위 ()				
척추의 운동범위 (A.M.A식) ※강직성척추염시 기재	부위	경추부(340도)		흉·요추부(240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전굴	45도		90도	
	후굴	45도		30도	
	좌굴	45도		30도	
	우굴	45도		30도	
	좌회전	80도		30도	
	우회전	80도		30도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국민연금(혈액·조혈기 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상태(년 월 일 현재) (해당항목에 √표 하세요)											
검 사 항 목	구 분		검 사 소 견								
	난치성빈혈군 (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 악성빈혈 등)		구 분	1	2	3					
			혈색소량	<input type="checkbox"/> 4.0g/dl 미만	<input type="checkbox"/> 6.0g/dl 미만	<input type="checkbox"/> 8.0g/dl 미만					
	조혈기종양군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등)		절대호중구수	<input type="checkbox"/> 500/mm ³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mm ³ 미만	<input type="checkbox"/> 1500/mm ³ 미만					
			혈소판수	<input type="checkbox"/> 2만/mm ³ 미만	<input type="checkbox"/> 5만/mm ³ 미만	<input type="checkbox"/> 7만/mm ³ 미만					
	출혈경향군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응고인자결핍증)		구 분	1	2	3					
			출혈시간(듀크법)	<input type="checkbox"/> 10분 이상	<input type="checkbox"/> 1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분 미만					
			응고시간(리화이트법)	<input type="checkbox"/> 30분 이상	<input type="checkbox"/> 30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20분 미만					
			혈소판수	<input type="checkbox"/> 1만/mm ³ 미만	<input type="checkbox"/> 3만/mm ³ 미만	<input type="checkbox"/> 5만/mm ³ 미만					
			PT/PTT	<input type="checkbox"/> 정상외 2.5배 이상 연장	<input type="checkbox"/> 정상외 2배 이상 연장	<input type="checkbox"/> 정상외 1.5배 이상 연장					
	혈중응고인자	<input type="checkbox"/> 정상외 0~2%	<input type="checkbox"/> 정상외 3~5%	<input type="checkbox"/> 정상외 6~25%							
	조 혈 기 종 양 군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등)	중증도	임 상 증 상						해당 항목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으면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2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약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 만성백혈병이 급성기로 전환된 경우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남아 있으면서 항암치료하고 있는 경우							
백혈병		BCR/ABL 검사결과		PML-RARA 검사결과							
다발성골수종	M 단백 검사	positive <input type="checkbox"/> negative <input type="checkbox"/>									
일 반 상 태	공 통	구 분	일 반 상 태							해당 항목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조혈모세포이식		동종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이식일								
관해		완전관해 <input type="checkbox"/> 부분관해 <input type="checkbox"/> 관해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국민연금(복부·골반장기 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장루여부	<input type="checkbox"/> 영구장루			<input type="checkbox"/> 비영구장루								
장루 보유수	<input type="checkbox"/> 1개			<input type="checkbox"/> 2개 이상								
장루 종류	<input type="checkbox"/> 장루			<input type="checkbox"/> 요루(인공방광)								
장루합병증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탈출(Prolapse)			<input type="checkbox"/> 탈장(Peristomal hernia)					
	<input type="checkbox"/> 장루 주위 피부 병변(Peristomal Skin irritation)			<input type="checkbox"/> 장루 주위 누공(fecal fistula)								
자가도뇨 실행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3회 /일			<input type="checkbox"/> 4회 이상/일			<input type="checkbox"/> 유치도뇨		
임상 증상	구분	임 상 증 상										해당항목
	1	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65% 이하로 감소된 경우										
	2	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75% 이하로 감소된 경우										
	3	소화흡수 기능장애, 국소장기 기능장애 또는 악액질로 인하여 체중이 건강시의 85% 이하로 감소된 경우										
	체중		건강시: kg	진단시: kg	경과시점: kg	청구시점: kg	키: cm					
일반 상태	구분	일 반 상 태										해당항목
	1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3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검사 항목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혈색소량(Hb)		<input type="checkbox"/> 10미만	<input type="checkbox"/> 8미만	<input type="checkbox"/> 6미만							
	알부민(Alb)		<input type="checkbox"/> 3미만	<input type="checkbox"/> 2.5미만	<input type="checkbox"/> 2미만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기타 검사											
기타 의사소견												

※ 최근 3개월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별지 제16호 서식]

국민연금(정신·신경계통 장애) 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장애상태(년 월 일 현재)											
입원기간				
현재 약물 투여 내용											
간 질 장애	간질 증후군명	있음(구체적으로 기술)					확실치 않음				
	뇌파검사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응도				
	발작의 형태 및 횟수	발작형태					횟수				
							중증(회/월)		경증(회/월)		
	검 사 항 목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뇌영상촬영									
		임상심리평가검사지									
	치매척도검사결과										
보호자 관리 필요유무 <small>(해당 항목에 √표)</small>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간헐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관리 불필요										
기타 의사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신·구조문대비표

□ 장애심사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수당 및 자문료) 자문의사가 제9조제1항에-----자문료를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자문수당) 공단은 자문의사가----제9조에-----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p> <p>①-----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상지 및 하지의 관절운동장애·척추장애·사지마비 장애는 별지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 서식에 의한 소견서 중 필요한 소견서를 추가 첨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p> <p>①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장애진단서(이하 ‘장애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는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p> <p>②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13. 2. 27.)</p> <p>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 시행 이후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시 적용했던 규정을 적용한다.</p>

□ 제1장 총론

현행	개정안
<p>2. 용어의 정의</p> <p>나. 완치</p> <p>-----</p> <p>-----말한다.</p> <p>다. 초진일</p> <p>-----</p> <p>-----말한다.</p>	<p>2. 용어의 정의</p> <p>나. 완치와 <u>완치일</u></p> <p>-----</p> <p>-----말한다. <u>다만, 완치일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다. 초진일</p> <p>-----</p> <p>-----말한다. <u>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1절 눈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9호	○ -----정도의 ----- -----시야각도의 합계가 ----			
4급9호	○ -----정도로 ----- -----시야가 각각 -----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다. 시력장애		다. 시력장애		
(2) <u>저시력 인정 기준은 0.3으로 한다.</u>		(2) <u>기존장애로 보는 시력은 저시력 인정 기준인 최대 교정시력 0.3이하로 한다.</u>		
마. 안구운동장애		마. 안구운동장애		
(1) -----판정한다.		(1) -----판정하되, 필요시 <u>Hess Screen</u> 검사, 안구운동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 설>		(2) <u>복시는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u>		
바. <u>안구적출술을 -----</u> <u>수술일로 완치일을 -----.</u>		바. <u>안구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을 -----</u> <u>수술일을 완치일로 -----.</u>		
<신 설>		차. <u>유전적 요인에 의한 안과질환(망막 색소변성증 등)의 초진일은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날 또는 0.3이하의 시력저하나 전형적인 시야장애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단,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우선하는 날을 초진일로 본다.</u>		

제3절 입의 장애

현행	개정안
<p>2. 인정요령</p> <p>나. 언어장애</p> <p>(2) (생략)</p> <p> (가) (생략)</p> <p> (나) <u>수용언어검사 : K-WAB, 한국실어증감별진단검사</u></p> <p> (대) <u>표현언어검사 : K-BNT</u></p> <p> (라) (생략)</p> <p>(5) (생략)</p> <p> (가) -----<u>못하고</u>-----.</p> <p> ①-----<u>이하이거나 전실어증인 경우</u></p> <p> ② <u>수용언어검사를 통한 수용언어능력이 백분위수 1퍼센타일 미만인면서 표현언어검사를 통한 표현언어능력도 백분위수 1퍼센타일 미만인 경우</u></p> <p> ③ (생략)</p> <p> (나) -----<u>못하고</u>-----.</p> <p> ① -----<u>이하이거나 고도의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으로 판정된 경우</u></p> <p> ② <u>수용언어검사를 통한 수용언어능력이 백분위수 1~5퍼센타일이면서 표현언어검사를 통한 표현언어능력도 백분위수 1~5퍼센타일인 경우</u></p> <p> ③ (생략)</p> <p> (다) (생략)</p> <p> ① -----<u>이하이거나 중등도의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으로 판정된 경우</u></p> <p> ② <u>수용언어검사를 통한 수용언어능</u></p>	<p>2. 인정요령</p> <p>나. 언어장애</p> <p>(2) (현행과 같음)</p> <p> (가) (현행과 같음)</p> <p> <삭제></p> <p> <삭제></p> <p> (나)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 (가) -----<u>못하거나</u>-----.</p> <p> ① -----<u>이하인 경우</u></p> <p> <삭제></p> <p> ② (현행과 같음)</p> <p> (나) -----<u>못하거나</u>-----.</p> <p> ① -----<u>이하인 경우</u></p> <p> <삭제></p> <p> ② (현행과 같음)</p> <p> (다) (현행과 같음)</p> <p> ① -----<u>이하인 경우</u></p> <p> <삭제></p>

력이 백분위수 6~10퍼센타일이면서 표현 언어검사를 통한 표현언어능력도 백분위수 6~10퍼센타일인 경우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절 지체의 장애

1. 팔(손가락)의 장애

현행		개정안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애 정도	장애등급	장애 정도
4급9호	○ -----정도의-----	4급9호	○ -----정도로-----
나. 인정요령		나. 인정요령	
(1) (생략)		(1) (현행과 같음)	
(라) ----- -----경과일로 완치일을 인정한다.		(라) -----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마) 팔(손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u>절단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 인정하되, 추가절단 및 동일부위에 연속적으로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절단일로부터 1월-----인정한다.</u> <u>단,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절단부위의 상태가 안정된 때에 한한다.</u>		(마) 팔(손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u>최종절단일 (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로부터 1개월-----인정하되,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u>	

2. 다리(발가락)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6호	○ (생 략) - ---- <u>전후방 10mm</u> ----	4급6호	○(현행과 같음) - ---- <u>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u> -----	
4급9호	○ ----- <u>정도의</u> -----	4급9호	○----- <u>정도로</u> -----	
나. 인정요령		나. 인정요령		
(1) (생 략)		(1) (생 략)		
(마) ----- ----- <u>경과일로 완치일을 인정한다.</u>		(마) ----- ----- <u>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u>		
(바) <u>다리(발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 인정하되, 추가절단 및 동일부위에 연속적으로 절단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절단일로부터 1월-----인정한다. 단,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고 절단부위의 상태가 안정된 때에 한한다.</u>		(바) <u>다리(발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최종절단일(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는 제외)로부터 1개월-----인정하되,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u>		
<신 설>		(5) <u>관절의 동요정도 측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u>		
		(가) <u>환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측정한 후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 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u>		
		(나) <u>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 관절을 약 20~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u>		
		(다) <u>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관절을 약 70~9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u>		

3. 척추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p>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장애등급</th> <th style="width: 85%;">장 애 정 도</th> </tr> <tr> <td>2급4호</td> <td>○ ----- <u>고도의</u> -----</td> </tr> </table> <p>나. 인정요령</p> <p>(1) (생 략)</p> <p>(가) -----<u>변형장애와 기능장애</u>----- -----<u>판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기능영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경추부</th> <th>운동기능</th> <th>흉추부</th> <th>운동기능</th> <th>요추부</th> <th>운동기능</th> </tr> </thead> <tbody> <tr><td>Occiput-C1</td><td>13</td><td>T1-T2</td><td>(4)</td><td>T12-L1</td><td>12</td></tr> <tr><td>C1-C2</td><td>10</td><td>T2-T3</td><td>(4)</td><td>L1-L2</td><td>12</td></tr> <tr><td>C2-C3</td><td>8</td><td>T3-T4</td><td>(4)</td><td>L2-L3</td><td>14</td></tr> <tr><td>C3-C4</td><td>13</td><td>T4-T5</td><td>(4)</td><td>L3-L4</td><td>15</td></tr> <tr><td>C4-C5</td><td>12</td><td>T5-T6</td><td>(4)</td><td>L4-L5</td><td>17</td></tr> <tr><td>C5-C6</td><td>17</td><td>T6-T7</td><td>(5)</td><td>L5-S1</td><td>20</td></tr> <tr><td>C6-C7</td><td>16</td><td>T7-T8</td><td>(6)</td><td></td><td></td></tr> <tr><td>C7-T1</td><td>6</td><td>T8-T9</td><td>(6)</td><td></td><td></td></tr> <tr><td></td><td></td><td>T9-T10</td><td>(6)</td><td></td><td></td></tr> <tr><td></td><td></td><td>T10-T11</td><td>9</td><td></td><td></td></tr> <tr><td></td><td></td><td>T11-T12</td><td>12</td><td></td><td></td></tr> <tr><td>합계(8분절)</td><td>95</td><td>합계(11분절)</td><td>21(64)</td><td>합계(6분절)</td><td>90</td></tr> </tbody> </table> <p>(다) (생 략)</p> <p>(라) “<u>경추부의 완전강직</u>”이라 함은 방 사선 사진 상 <u>경추부의 완전 유합이</u> <u>확인되고,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0</u> <u>도 임을 말한다.</u></p> <p>(마) “<u>요추부의 완전강직</u>”이라 함은 방 사선 사진 상 <u>요추부의 완전 유합이</u></p>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4호	○ ----- <u>고도의</u> -----	경추부	운동기능	흉추부	운동기능	요추부	운동기능	Occiput-C1	13	T1-T2	(4)	T12-L1	12	C1-C2	10	T2-T3	(4)	L1-L2	12	C2-C3	8	T3-T4	(4)	L2-L3	14	C3-C4	13	T4-T5	(4)	L3-L4	15	C4-C5	12	T5-T6	(4)	L4-L5	17	C5-C6	17	T6-T7	(5)	L5-S1	20	C6-C7	16	T7-T8	(6)			C7-T1	6	T8-T9	(6)					T9-T10	(6)					T10-T11	9					T11-T12	12			합계(8분절)	95	합계(11분절)	21(64)	합계(6분절)	90	<p>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장애등급</th> <th style="width: 85%;">장 애 정 도</th> </tr> <tr> <td>2급4호</td> <td>○ ----- <u>극히 심한</u> -----</td> </tr> </table> <p>나. 인정요령</p> <p>(1) (현행과 같음)</p> <p>(가)-----<u>기능장애와 변형장애</u>----- -----<u>판단하고, 변형장애는 반드시 누운</u> <u>자세(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u> <u>촬영(Spine Scanogram)을 통한 검사소</u> <u>견에 의하여 판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표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기능영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경추부</th> <th>운동기능</th> <th>흉추부</th> <th>운동기능</th> <th>요추부</th> <th>운동기능</th> </tr> </thead> <tbody> <tr><td>Occiput-C1</td><td>13</td><td>T10-T11</td><td>9</td><td>T12-L1</td><td>12</td></tr> <tr><td>C1-C2</td><td>10</td><td>T11-T12</td><td>12</td><td>L1-L2</td><td>12</td></tr> <tr><td>C2-C3</td><td>8</td><td></td><td></td><td>L2-L3</td><td>14</td></tr> <tr><td>C3-C4</td><td>13</td><td></td><td></td><td>L3-L4</td><td>15</td></tr> <tr><td>C4-C5</td><td>12</td><td></td><td></td><td>L4-L5</td><td>17</td></tr> <tr><td>C5-C6</td><td>17</td><td></td><td></td><td>L5-S1</td><td>20</td></tr> <tr><td>C6-C7</td><td>16</td><td></td><td></td><td></td><td></td></tr> <tr><td>C7-T1</td><td>6</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8분절)</td><td>95</td><td>합계(2분절)</td><td>21</td><td>합계(6분절)</td><td>90</td></tr> </tbody> </table> <p>(라)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4호	○ ----- <u>극히 심한</u> -----	경추부	운동기능	흉추부	운동기능	요추부	운동기능	Occiput-C1	13	T10-T11	9	T12-L1	12	C1-C2	10	T11-T12	12	L1-L2	12	C2-C3	8			L2-L3	14	C3-C4	13			L3-L4	15	C4-C5	12			L4-L5	17	C5-C6	17			L5-S1	20	C6-C7	16					C7-T1	6					합계(8분절)	95	합계(2분절)	21	합계(6분절)	90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4호	○ ----- <u>고도의</u> -----																																																																																																																																																		
경추부	운동기능	흉추부	운동기능	요추부	운동기능																																																																																																																																														
Occiput-C1	13	T1-T2	(4)	T12-L1	12																																																																																																																																														
C1-C2	10	T2-T3	(4)	L1-L2	12																																																																																																																																														
C2-C3	8	T3-T4	(4)	L2-L3	14																																																																																																																																														
C3-C4	13	T4-T5	(4)	L3-L4	15																																																																																																																																														
C4-C5	12	T5-T6	(4)	L4-L5	17																																																																																																																																														
C5-C6	17	T6-T7	(5)	L5-S1	20																																																																																																																																														
C6-C7	16	T7-T8	(6)																																																																																																																																																
C7-T1	6	T8-T9	(6)																																																																																																																																																
		T9-T10	(6)																																																																																																																																																
		T10-T11	9																																																																																																																																																
		T11-T12	12																																																																																																																																																
합계(8분절)	95	합계(11분절)	21(64)	합계(6분절)	90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4호	○ ----- <u>극히 심한</u> -----																																																																																																																																																		
경추부	운동기능	흉추부	운동기능	요추부	운동기능																																																																																																																																														
Occiput-C1	13	T10-T11	9	T12-L1	12																																																																																																																																														
C1-C2	10	T11-T12	12	L1-L2	12																																																																																																																																														
C2-C3	8			L2-L3	14																																																																																																																																														
C3-C4	13			L3-L4	15																																																																																																																																														
C4-C5	12			L4-L5	17																																																																																																																																														
C5-C6	17			L5-S1	20																																																																																																																																														
C6-C7	16																																																																																																																																																		
C7-T1	6																																																																																																																																																		
합계(8분절)	95	합계(2분절)	21	합계(6분절)	90																																																																																																																																														

확인되고, 요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0도 임을 말한다.

(바) 척추의 변형정도는 반드시 방사선 촬영(Spine Scanogram)을 통한 검사 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

(사) -----척추를 2개 이상의-----
-----와이어고정술은-----.

(아) -----6월-----.

(자) (생략)

(4) (생략)

<신설>

<신설>

<삭제>

(다) -----척추 한 분절 이상을-----
-----와이어고정술 등은-----.

(마) -----6개월-----.

(바)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완전강직”이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나) “완전유합”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단순 방사선사진 또는 CT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척추의 후중인대골화의 두께가 2mm 이상

② 척추체의 완전골화

③ 그 외 척추의 후외방 골유합 상태

4. 사지마비의 장애

현행	개정안																				
<p>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 정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급6호</td> <td>○ ---보호를 요하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급1호</td> <td>○ -----노동에 <u>고도의</u>----- 노동에 <u>고도의</u>----- 정도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1호</td> <td>○ -----정도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9호</td> <td>○ -----정도의-----</td> </tr> </tbody> </table>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6호	○ ---보호를 요하는-----	2급1호	○ -----노동에 <u>고도의</u> ----- 노동에 <u>고도의</u> ----- 정도의-----	3급1호	○ -----정도의-----	4급9호	○ -----정도의-----	<p>가. 장애등급구분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 정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급6호</td> <td>○ ---보호가 필요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급1호</td> <td>○ ---노동에 <u>극히 심한</u>----- 노동에 <u>극히 현저한</u>----- <u>정도로</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1호</td> <td>○ -----정도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급9호</td> <td>○ -----정도로-----</td> </tr> </tbody> </table>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6호	○ ---보호가 필요한-----	2급1호	○ ---노동에 <u>극히 심한</u> ----- 노동에 <u>극히 현저한</u> ----- <u>정도로</u> -----	3급1호	○ -----정도로-----	4급9호	○ -----정도로-----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6호	○ ---보호를 요하는-----																				
2급1호	○ -----노동에 <u>고도의</u> ----- 노동에 <u>고도의</u> ----- 정도의-----																				
3급1호	○ -----정도의-----																				
4급9호	○ -----정도의-----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6호	○ ---보호가 필요한-----																				
2급1호	○ ---노동에 <u>극히 심한</u> ----- 노동에 <u>극히 현저한</u> ----- <u>정도로</u> -----																				
3급1호	○ -----정도로-----																				
4급9호	○ -----정도로-----																				
<p>나. 인정요령</p> <p>(1) (생략)</p> <p>(가) -----판정하지만 뇌졸중----- -----.</p> <p>(나) 뇌손상(뇌졸중), 척수손상----- 12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p> <p>(다) 척수손상-----6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p> <p>(라) 뇌손상(뇌졸중)----- 6월이 경과된 날로 완치일을-----.</p> <p><신설></p>	<p>나. 인정요령</p> <p>(1) (현행과 같음)</p> <p>(가) -----판정하지만 <u>이를 적용할</u> <u>수 없거나</u> 뇌졸중-----.</p> <p>(나) 뇌손상(뇌졸중), 척수손상----- 12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p> <p>(다) 척수손상-----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p> <p>(라) 뇌손상(뇌졸중)-----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p> <p>(마) "<u>식물인간 상태</u>"라 함은 <u>아래의 항목</u> <u>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되, 뇌영상</u> <u>사진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u> <u>다만, ⑤, ⑥ 항은 제시된 기준보다 장애</u> <u>상태가 심한 경우도 포함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① <u>시각, 청각, 촉각, 후각의 자극에 대해</u> <u>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u> <u>적인 행동 반응이 없다.</u></p> <p style="padding-left: 2em;">② <u>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u></p>																				

(마) (생략)

(2) (생략)

(나) 다리의 기능

① ~ ⑤ (생략)

<신설>

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못한다.

③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④ 장과 방광 조절이 안된다.

⑤ 각성과 수면 주기에 의한 간헐적 각성이 있다.

⑥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눈을 움직이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다리의 기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중교통 이용하기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7호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	1급7호	○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2급2호	○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2급2호	○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4급10호	○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4급10호	○ -----노동에 제한을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알콜중독장애, 기질적 뇌증후군 (일산화탄소중독, 두부외상 후유증, 뇌혈관 계질병 등) 및 비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정신장애는-----.		가. -----알콜중독장애, 일산화탄소중독, 두부외상 후유증, 뇌혈관계질병 등을----- -----장애등급 결정은-----.	

제6절 호흡기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상병이-----장기에 걸쳐-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1급8호	○ 부상이나 질병이----장기간의--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2급3호	○ 상병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 또는 노동에 제한을-----정도의 -----	2급3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극히 심한-----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정도로-----
3급3호	○ 상병이-----노동에 있어서 현저한-----노동에 제한을 -----정도의-----	3급3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심한-----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정도로-----
4급1호	○ 상병이-----노동을 제한할-----	4급1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제한을 가할-----
2. 인정요령 가. (생 략) <신 설>		2. 인정요령 가. (현행과 같음) (5) 폐를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제7절 심장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u>상병이</u> ----- <u>장기에 걸쳐-</u> <u>---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u>	1급8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장기간의--</u> <u>----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u>
2급3호	○ <u>상병이</u> - <u>노동에 있어서</u> <u>고도의</u> ---- <u>또는 노동에</u> <u>제한을</u> ----- <u>정도의</u> ----	2급3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 극히</u> <u>심한</u> ----- <u>노동에 극히 현저한</u> <u>제한을</u> ----- <u>정도로</u> -----
3급3호	○ <u>상병이</u> ----- <u>노동에 있어서</u> <u>현저한</u> ----- <u>노동에 제한을</u> <u>-----정도의</u> -----	3급3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u> <u>심한</u> ----- <u>노동에 현저한 제한을</u> <u>-----정도로</u> -----
4급1호	○ <u>상병이</u> ----- <u>노동을</u> <u>제한할</u> -----	4급1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u> <u>제한을 가할</u> -----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설>		(4) 심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심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제8절 신장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u>상병이</u> ----- <u>장기에 걸쳐</u> ----- <u>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u> -----	1급8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장기간의</u> ---- <u>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u> -----
2급3호	○ <u>상병이</u> - <u>노동에 있어서 고도의</u> ----- <u>또는 노동에 제한을</u> ----- <u>정도의</u> -----	2급3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 극히 심한</u> ----- <u>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u> ----- <u>정도로</u> -----
3급3호	○ <u>상병이</u> ----- <u>노동에 있어서 현저한</u> ----- <u>노동에 제한을</u> ----- <u>정도의</u> -----	3급3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 심한</u> ----- <u>노동에 현저한 제한을</u> ----- <u>정도로</u> -----
4급1호	○ <u>상병이</u> ----- <u>노동을 제한할</u> -----	4급1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 제한을 가할</u> -----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2) <u>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인정하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는 우선하는 날로 인정한다. 단, 신기능이 정상소견으로 회복된 경우는 초진일로 인정하지 않는다.</u>	
		① <u>혈청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비정상범주에 2회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2회 중 1회에 해당하는 때</u>	
		② <u>혈청 크레아티닌이 비정상범주이고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미만인 때(사구체여과율 검사결과가 없을 경우 사구체여과율추정치로 계산)</u>	
(2) (생략)		(3) (현행과 같음)	
(3) -----3월-----6월-----.		(4) -----3개월-----6개월-----.	
(4)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9절 간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u>상병이</u> ----- <u>장기에 걸쳐</u> ----- <u>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u> -----	1급8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장기간의</u> ---- <u>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u> -----
2급3호	○ <u>상병이</u> - <u>노동에 있어서</u> <u>고도의</u> ----- <u>또는 노동에</u> <u>제한을</u> ----- <u>정도의</u> -----	2급3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 극히</u> <u>심한</u> ----- <u>노동에 극히 현저한</u> <u>제한을</u> ----- <u>정도로</u> -----
3급3호	○ <u>상병이</u> ----- <u>노동에 있어서</u> <u>현저한</u> ----- <u>노동에 제한을</u> ----- <u>정도의</u> -----	3급3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u> <u>심한</u> ----- <u>노동에 현저한 제한을</u> ----- <u>정도로</u> -----
4급1호	○ <u>상병이</u> ----- <u>노동을</u> <u>제한할</u> -----	4급1호	○ <u>부상이나 질병이</u> ----- <u>노동에</u> <u>제한을 가할</u> -----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5) <u>간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간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A 표 : 만성간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A 표 : 만성간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중증도	임 상 증 상	중증도	임 상 증 상
4	1) (생략) 2) <u>미소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u> 3) (생략) 4) (생략)	4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제11절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현행		개정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8호	○ 상병이-----장기에 걸쳐-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1급8호	○ 부상이나 질병이----장기간의--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2급3호	○ 상병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 또는 노동에 제한을-----정도의 -----	2급3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극히 심한-----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정도로-----
3급3호	○ 상병이-----노동에 있어서 현저한-----노동에 제한을 -----정도의-----	3급3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심한-----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정도로-----
4급1호	○ 상병이-----노동을 제한할-----	4급1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제한을 가할-----

제12절 안면의 장애

현행	개정안												
<p>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정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급1호</td> <td>○ ---노동에 <u>고도의</u> ----- -----<u>노동을 제한할</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1호</td> <td>○ -----<u>노동을 현저히</u> <u>제한할</u>-----</td> </tr> </tbody> </table> <p>2. 인정요령</p> <p>바. -----<u>MRI, 동영상</u> <u>자료 등으로</u>-----.</p> <p>자. -----<u>6개월이</u> <u>경과한 날로 완치일을</u>-----.</p>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1호	○ ---노동에 <u>고도의</u> ----- ----- <u>노동을 제한할</u> -----	3급1호	○ ----- <u>노동을 현저히</u> <u>제한할</u> -----	<p>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장애정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급1호</td> <td>○ -----노동에 <u>극히 심한</u>----- <u>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u> <u>할</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급1호</td> <td>○ -----<u>노동에 현저한</u> <u>제한을 가할</u>-----</td> </tr> </tbody> </table> <p>2. 인정요령</p> <p>바. -----<u>MRI 등으로</u> -----.</p> <p>자. -----<u>6개월이</u> <u>경과한 날을 완치일로</u>-----.</p>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1호	○ -----노동에 <u>극히 심한</u> ----- <u>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u> <u>할</u> -----	3급1호	○ ----- <u>노동에 현저한</u> <u>제한을 가할</u> -----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1호	○ ---노동에 <u>고도의</u> ----- ----- <u>노동을 제한할</u> -----												
3급1호	○ ----- <u>노동을 현저히</u> <u>제한할</u> -----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1호	○ -----노동에 <u>극히 심한</u> ----- <u>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u> <u>할</u> -----												
3급1호	○ ----- <u>노동에 현저한</u> <u>제한을 가할</u> -----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현 행		개 정 안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8호	○ 상병이-----장기에 걸쳐-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1급8호	○ 부상이나 질병이----장기간의--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2급3호	○ 상병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 또는 노동에 제한을-----정도의 -----	2급3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극히 심한-----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정도로-----
3급3호	○ 상병이-----노동에 있어서 현저한-----노동에 제한을 -----정도의-----	3급3호	○ 부상이나 질병이-----노동에 심한-----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정도로-----
2. 인정요령		2. 인정요령	
다. -----6월----- -----6월-----.		다. -----6개월----- -----6개월-----.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p>1. 신체장애 각도 측정의 일반원칙 가. (1), (2) (생략)</p> <p>(3) 기능(운동)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적용 하지만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p> <p>2. 운동범위 측정요령 가. 팔(손가락)</p> <p>-----능동운동의----- -----(중간 생략)-----능동운동으로 ------(이하 생략)</p>	<p>1. 신체장애 각도 측정의 일반원칙 가. (1), (2) (현행과 같음)</p> <p>(3) 기능(운동)장애는 원칙적으로 수동 운동에-----적용한다. 단, 신경손상으로 마비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측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p> <p>2. 운동범위 측정요령 가. 팔(손가락)</p> <p>-----수동운동의----- -----(중간 생략)-----수동운동으로 ------(이하 생략)</p>